첨부파일 2. 소비자 주의사항

<< 계약체결 전 >>

- □ 계약기간, 서비스 내용, 위약금 등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다.
 - 특약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거부하거나 중도 해지 시 할인 전 정상가로 계산 하여 환급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특약사항 및 해지 위약금 등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, 구두로 약정하는 내용도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함.

□ 장기 계약 시 신용카드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한다.

- 중도해지 및 환급 거부 등에 대비해 현금 지급, 신용카드 일시불 보다는 신용카드 할부 결제^{*}를 하는 것이 좋음.
 - * 할부수수료가 청구될 수 있으므로 할부수수료 발생 여부 및 요율을 카드사에 확인 필요

<< 계약체결 후 >>

- □ 계약 해지 시에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한다.
 - o 사업자가 계약해지 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, 즉시 사업자와 신용 카드사에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음.
- □ 의무이용기간을 설정했더라도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.
 - 1개월 이상 계약인 경우 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」상 계속거래에 해당되어 언제든 중도 해지가 가능하며, 의무이용기간 또는 일정기간 이내 계약해지 불가라는 약정이 있더라도 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움.
- □ 수능 관련 인터넷교육서비스 계약해지 시 위약금 부담 의무 없다.
 - 호・중・고 대상 인터넷강의는 「학원의 설립・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
 (원격교육시설)의 "교습비 반환기준"에 따라 계약해지 시 위약금 부담의무가 없고, 실제 수강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를 환급받을 수 있음.
- □ 사업자와 분쟁 발생 시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.
 - ※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,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(국번 없이 1372, www.ccn.go.kr)에 도움을 요청한다.